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양문석 · 서미화 · 양부남
최혁진 · 이광희 · 김우영
최민희 · 이주희 · 강득구
윤준병 · 이재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, 경제,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.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나아가 조정신청 시에도 온라인 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.

또한 언론의 보도, 게시, 매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‘정보’와 달리 인격권 등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.

따라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조정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.

이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,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(안 제2조, 제5조, 제14조 및 제18조 등).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“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”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, 논평,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 수,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게시된 것을 말한다.

23. “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”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매개하는 자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(이하 “언론등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인터넷뉴스서비스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(이하 “언론등”이라 한다)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언론등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언론등의 보도”를 “언론등의 보도, 게시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”를 “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”로 한다.

제1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게재한 자를 특정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(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성명·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)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
⑧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제7항에 따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3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2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21. (현행과 같음) 22. “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”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, 논평,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 수,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게시된 것을 말한다.
<u><신설></u>	23. “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”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매개하는 자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제5조(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) ① 언론, <u>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</u> (이하 “언론등”이라 한다)은 타	제5조(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) ① ----- <u>인터넷뉴스서비스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</u>

인의 생명, 자유, 신체, 건강, 명예,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초상(肖像), 성명, 음성, 대화, 저작물 및 사적(私的) 문서,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(이하 “인격권”이라 한다)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제7조(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)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(이하 “언론보도등”이라 한다)로 인한 분쟁의 조정·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(이하 “중재위원회”라

(이하 “언론등”이라 한다)는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언론등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7조(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) ①
언론등의 보도, 게시-----

한다)를 둔다.

② ~ ⑪ (생략)

제14조(정정보도 청구의 요건) ①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
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
하여 피해를 입은 자(이하 “피
해자”라 한다)는 해당 언론보
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
월 이내에 언론사, 인터넷뉴스
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
미디어 방송사업자(이하 “언론
사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언론
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
도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
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
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8조(조정신청) ① ~ ⑥ (생
략)

<신설>

-----.

②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정정보도 청구의 요건) ①

-----인터넷뉴스서
비스사업자, 인터넷 멀티미디어
방송사업자 및 온라인동영상뉴
스서비스제공자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조정신청) ① ~ ⑥ (현행
과 같음)

⑦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
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중재
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
하여 해당 온라인동영상뉴스서
비스를 게재한 자를 특정하려

<신 설>

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온라인 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(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성명·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)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
⑧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제7항에 따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34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

② (생략)	<u>다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</u> <u>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	--